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제142호

이달의 주요뉴스

 2012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위원회 창립 31주년 기념식



2012. **4**

CONTENTS

2012년 4월. 제142호



04



08



13



이달의 주요뉴스

03 2012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위원회 창립 31주년

04 위원회 창립 31주년 기념식 및 축하 메시지

위원단상

05 유럽 복지선진국의 재정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내 마음의 책

06 신분의 벽을 부수고 평등사회를 연 「파격」

언론분쟁 경험기

08 한 순간 잃어버린 나의 명예, 그 소중함을 되찾기까지

판례토크

10 '얼굴'까지 공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심의후기

11 2010년 함안, 2012년 상주

12 위원동정

13 위원회 소식

14 위원회 통계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언론피해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언론사, 대학, 기업, 공공관 등을 대상으로 언론보도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운영위원, 시정권고위원 선출



“준사법기구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견지해야”



언론중재위원회는 3월 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1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1년도 결산안과 2012년도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을 처리하고, 운영위원 9명과 시정권고위원 7명을 선출했다. (선출위원 명단 하단)

정학철 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 위원회는 2,124건의 조정사건을 처리하였고 조정성공률 70.9%를 기록하는 등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면서, “이러한 양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질적인 향상을 위해 피해구제보도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선거철이니만큼 우리 위원회가 평소와 같이 준사법기구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견지, 주어진 사건을 충실히 처리하여 국민과 언론의 신뢰를 계속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영위원, 시정권고위원 명단〉

<p>운영위원(9명)</p>	<p>권 성 위원장, 김종량 부위원장(전북중재부), 장진훈(서울제2중재부), 김정택(서울제6중재부), 박경우(부산중재부), 김정숙(대구중재부), 조동수(광주중재부), 김수정(대전중재부), 남부희(경남중재부) 위원</p>
<p>시정권고위원(7명)</p>	<p>권 성 위원장, 정학철 부위원장(서울제7중재부), 권 일(서울제2중재부), 손영준(서울제3중재부), 한천수(서울제4중재부), 어경택(서울제5중재부), 홍숙영(경기중재부) 위원</p>

위원회 창립 31주년 기념식



위원회 창립 31주년 기념식이 3월 30일 오전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오광건 사무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성실하게 각자의 업무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더 큰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위원회 사무처 내에 소통과 협력의 조직문화가 더욱 굳건히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유공부서와 유공직원에 대한 위원장 표창 및 장기근속상이 수여됐다.

- ▲유공부서 : 기사심의팀, 정책연구팀, 예산회계팀
- ▲유공직원 : 김주용 차장(접수상담팀), 여운규 차장(교육팀), 최영훈 차장(기획팀), 김종필(총무팀), 이진희(대전사무소)
- ▲20년 근속직원 : 강현석 팀장(교육팀), 황난희(부산사무소)

위원회 창립 3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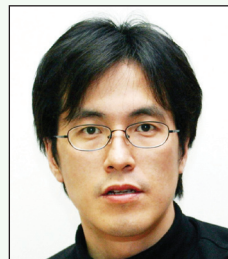
강영수 부장판사(부산고법, 전 중재위원)
위원회의 창립 제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재위원으로서 맑은 영혼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분들과 함께 정열적으로 일 하였던 추억은 영원한 즐거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회가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조화시키는 보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재진 교수(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전공)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언론보도 피해구제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창립 3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미디어 빅뱅 시대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임무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기관으로서 우일신(又日新)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승중 회장(대한국매거진협회)
언론중재위원회의 신속한 중재와 구제역할은 요즘 같은 언론자유 시대에 큰 빛을 발합니다. 언론보도는 신속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위해 더욱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



선우정 차장(조선일보 사회부)
언론중재위원회는 비판받는 사람이 수긍하는 최상의 품격을 언론에 요구한다. 중재위원회의 역사는 그래서 언론의 품격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축하! 31주년.

Facebook

이승남

언론중재위원회의 서른 한 번째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쳐지지 않는 중립기구로서 공명정대한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Twitter

heedae20

앞으로도 부단히 소통하며 언제나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창립 31주년 축하드립니다!

gio0900

공정한 언론, 객관적인 언론을 만들기 위해 늘 지킴이 역할을 해주시고 공익과 인권을 지탱해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노력에 늘 감사드립니다.

유럽 복지선진국의 재정위기가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



윤 덕 우 위원
대구중재부

구미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크다. 하지만 정부는 추락을 받쳐 주는 안전망 역할보다는 도약을 뒷받침해주는 뿔뿔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유럽 언론사가 주최한 국가·복지의 역할에 대한 토론에서 로버트 라이시 전 미국 노동부 장관이 한 말이다. ‘자본주의 4.0’의 저자 아니톨 칼레츠키는 라이시 전 장관의 이같은 ‘뿔뿔 정부론’에 대해 “뿔뿔이 정부가 해야 하는 복지의 역할을 잘 표현해준 것 같아 매우 맘에 든다. 하지만 유럽 연금제도와 같은 비대한 복지제도는 마치 암(癌)과 같다. 암처럼 점점 번져가며 다른 세포를 죽이고 결국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한다”고 말했다. 선진 복지국가제도를 도입하려는 우리나라는 라이시나 칼레츠키의 이 같은 말을 그 어느 때보다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위기로 전세계의 눈총을 받고 있는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PIGS 국가들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유럽문명의 뿌리이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한때 수많은 식민지를 경영하며 세계를 호령했던 초강대국이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이들 국가가 축적한 부와 국가경영의 지혜는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쌓아온 그 화려했던 명성도 과도한 복지정책 앞에 불과 수십 년 만에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있다. 경제력에 걸맞지 않는 무리한 복지로 이들 국가의 재정이 크게 흔들리면서 요즘은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로 묘사되고 있다. PIGS, ‘돼지들’이다. 당사국들로서는 들을수록 기분 나쁜 비아냥거림이지만 어쩔 수가 없다. 스스로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이들 국가만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던 유럽 대부분의 복지선진국들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복지강국으로 유명했던 나라들은 세금을 많이 걷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복지강국의 세금부담률이 40%를 넘어선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불리는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룩셈부르크 같은 북유럽 국가도 보편적 복지 혜택을 줄여가는 복지개혁을 추진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유럽의 복지국가 정책들을 그나마 조심스럽게 도입했던 일본도 저출산·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복지재정

을 충당하려다 심각한 재정위기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올해는 선거의 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다. 자연스럽게 복지정책이 가장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복지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는 복지에 소요되는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경제력에 걸맞지 않은 과잉 복지는 결국은 재정위기를 초래한다. 복지의 재원은 국민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충당된다. 만약 국민들이 복지에 충당되는 추가 세금을 부담하기 싫어할 때는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20% 정도로 복지강국들보다 훨씬 적다.

앞서가는 국가들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뒤따라가는 이점은 앞서간 나라들의 실패를 보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분에 넘치는 복지정책으로 재정위기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들의 실패와 위기를 보고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암담할 뿐이다.

우리 경제력이 감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는 우리 사회의 안정망을 강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하지만 나라 빚으로 충당하는 선심성 과잉복지는 국가와 후손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과도한 욕심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진정으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복지국의 실패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을 도출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저비용 고효율의 지속가능한 한국식 복지모델을 모색하고 수립하여야 한다. 🇰🇷



신분의 벽을 부수고 『파격』 평등사회를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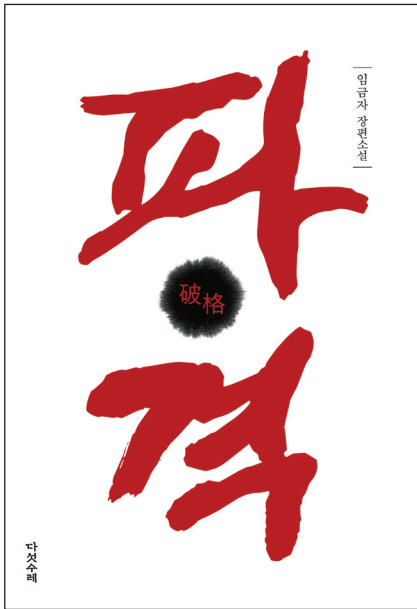
김 태 진

언론중재위원 (2005. 11. ~ 2008. 3.)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의장
동아일보 기자

15년 전쯤 출판인산악회 회원들과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4,300미터)까지 등반을 했다. 그때 우리 일행보다 많은 사람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등반을 했는데, 산행을 지휘하는 현지 책임자 두 명은 우리가 맨 것보다 작은 가방을 메고 편안하게 산행을 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일을 잘하면 저 두 사람처럼 책임자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네팔은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낮은 계층 사람은 책임자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드릴 때 현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죽고 난 뒤의 내세를 위해 기도하면서, 다시 태어날 때는 상위 신분으로 태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고 했다. 네팔 국민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신분제도 때문

이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었다. 우리도 조선시대까지는 신분사회였다. 만약 지금껏 신분제도가 남아 있다면 우리도 네팔처럼 가난한 나라였을 것이다.

조선시대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개혁에 앞장섰던 이들은 실학자였다. 이들은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선이 외침을 계속 당하는 것은 나라가 가난해서 힘이 없기 때문인데, 나라를 강하고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꾼인데 정작 그들에게는 자기 땅이라고 밭을 파고 땅 한 평 없고, 권세 있는 궁방, 아문, 양반 토호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농산물의 증산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실학자들은 농민 한



호가 소유할 수 있는 영업을 주고 이 땅은 매매할 수 없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또 고을마다 학교를 만들어 학생을 양반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교육한 뒤, 고을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한 학생을 한양으로 보내자고 했다. 학생을 양반에만 국한시키지 말자고 한 데에는 신분 철폐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당시 실학자들의

제안을 조정 대신들이 받아들일 리 없었다.

권철신과 이벽, 정약용 형제, 이승훈 같은 실학자들은 1779년 12월 천진암 강학회에서 서학(西學, 천주교)을 깊게 토론한 뒤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종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선교사 없이 자생적으로 천주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천주교에서 “모든 사람은 똑같은 하느님의 자손이다.”라는 교리는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이며, 일부일처제는 축첩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남녀가 평등하다는 외침이며, 주일을 정해 그날은 일하지 않고 기도만 드리는 것은 일 년 열두 달 하루도 쉬는 날이 없던 사람들에게는 노동혁명이었다.

『파격』은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적 사건을 뼈대로 하고 문학적 진실로 살을 채워 넣은 장편소설이다.

중국 철학을 전공한 임금자 수녀가 쓴 『파격』은 순조 34년(1883년)에서 현종 13년(1847년)에 일어난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적 사건을 뼈대로 하고 문학적 진실로 살을 채워 넣은 장편소설이다. 『파격』은 낙방 서생 정시윤이 우연히 김재연을 만나 상인으로 변신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언어에 대한 탁월한 재능과 예리한 판단력을 겸비한 역관 김재연은 정시윤을 데리고 동지사 일행과 베이징을 향해 떠난다. 김재연은 서양 세력과 청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마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영어까지 배워오라는 순조의 밀지를 받고 떠난 것이다. 김재연의 도움으로 크게 성공한 정시윤은 베이징에 상점까지 내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뒤 서양 세력

의 본거지인 중국 남방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는 상하이와 광저우를 넘어 미국을 향해 배를 띄운다.

신분제도를 철폐하는 것만이 조선 백성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라 믿고 베이징을 드나들며 성직자가 없는 조선에 성직자를 데려오려고 노력하는 유진길의 소설 속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청국은 영국을 비롯한 서양제국이 아편을 대량으로 들여오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결국 전쟁으로 치닫는다. 청국은 서양 세력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해 몇 척에 불과한 영국 함대에 패하고 난징조약을 맺음으로써 서양 세력의 중국 상륙이 자유롭게 된다. 이 아편전쟁을 종결하는 난징조약 현장에 프랑스 세실 제독의 통역관으로 김대건이 참관한 사실과, 신분제도를 철폐하는 것만이 조선 백성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라 믿고 베이징을 드나들며 성직자가 없는 조선에 성직자를 데려오려고 노력하는 유진길의 소설 속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파격』은 유진길이 앵베르 주교,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를 조선에 입국시키는 데 성공하고, 조선인 최초로 신부가 된 김대건의 활동과 기해박해와 병오박해를 겪는 신도의 순교를 그린 종교소설이다. 또한 종교소설 이전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 다시 말해 신분의 벽을 부수고 평등사회를 연 사람들의 이야기로 엮어진 역사소설이다. 그 시절 신분의 벽을 허물지 못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어떠할까 생각해 본다. 🌈





안 소 희 대학생

한순간 잃어버린 나의 명예, 그 소중한 가치를 되찾기까지

신문을 보면 기업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인들이 서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연예인이 네티즌을 고소했다는 기사가 꽤 자주 실린다. 그동안 그들이 언론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을 당하며 법적다툼을 하고 심적인 고통을 호소할 때, 그들의 심정을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하였다. 아주 평범한 대학생인 나에게는 그러한 언론분쟁, 법적다툼이 너무나 생소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그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아주 평범한 대학생인 나에게는 그러한 언론분쟁, 법적다툼이 너무나 생소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그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가 연락을 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내 인터뷰와 사진이 실린 기사가 A신문사에 나왔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그 기사를 찾아봤더니 나의 사진이 실려 있고 그 밑에는 한 사립대 경영학과 4학년 대학생을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자세히 보니 내 성과는 다르게 정 모씨라고 되어 있었지만 나는 대학교 4학년 그것도 경영학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나조차도 헛갈릴만한 상황이었다. 기사에 실린 사진은 작년에 해외봉사 갔을 때의 사진이었다. 우리 봉사단의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신문에 20차례 소개가 되었고 그 기사에 모두 이번과 같은 사진이 실렸었다. 다음 기수 선발에도 포스터 사진으로 사용되어 SNS에 많이 있는 사진이어서 주변사람들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음에도 모두 알아보고 연락을 해준 것이었다.

사진에 찍힌 나의 행복한 모습과는 반대로 이 기사는 내가 더 이상 웃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기사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요즘 학생들은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취업을 위해 이른바 스펙 쌓기를 위해 자비를 들여서 최저가 해외여행이라는 생각으로 해외봉사를 다녀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로 어쩔 수 없이 해외봉사를 다녀왔다는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 인터뷰 바로 위에 나의 사진이 실려 있고 사진 밑에는 “위 사진과 기사의 내용은 무관합니다”라는 당연하게 필요한 설명 대신에 “순수한 봉사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학생도 많지만 최근엔 여행 자체가 목적이거나 취업용 스펙 쌓기를 위해 해외 봉사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라고 오히려 부정적인 면을 더 강조하며 적혀 있었다.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로 인하여 내가 마치 잘못된 일로 인해 신상을 숨기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황당한 일은 처음 당해서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다행히 해외봉사를 주최해 준 곳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A신문사에 해당 기사의 사진을 항의하며 사진 삭제요청을 하였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1주일도 지나도 사진은 삭제되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여 일단 신문사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고 기사의 사진에 대한 항의를 하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필자는 그 이후로 언론사가 너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나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상대방에게 사진 삭제를 요구하는 것조차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 너무나 절망스러웠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굳혔지만 아는 것이 전혀 없어서 막막했다. 일단 인터넷에서 도



※2011년 캄보디아에서의 봉사활동 사진(당시 A신문사에서는 왼쪽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게재하였다.)

움을 얻어 보기로 했다. 언론피해에 대한 검색을 하자 언론중재위원회가 나왔고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법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홈페이지에 방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고 예문도 있어서 그것을 참고하며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동안 같은 사진이 20차례 게재되었던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도 첨부하였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신청서를 자료들과 함께 제출하자 언론중재위원회 측에서 연락이 와서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위원회에 출석하여 피신청인 측과 함께 언론중재위원들 앞에서 조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위원회에 나가서 피신청인인 신문사 대리인을 만나고 진술해야 한다는 사실이 많이 힘들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내 사진이 무단 도용되어 명예가 지속적으로 훼손되는 것보다는 괴롭지 않았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1차 조정심리 과정에서 부장관사, 언론인, 언론학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언론중재위원들께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정을 해주셨고 이로 인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1차 심리의 결과, 사전에 이미 기사로 많이 유포되어있었던 사진이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도 본인이 특정된 것이 인정되고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결론이 났다. 언론중재위원들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권고했지만 피신청인 측이 회사와 상의를 해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1번의 심리를 더 받아야 했다. 이러한 과정들은 나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결국 한동안 앓아누워 있어야 할 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아졌다. 2차 심리에서는 1차의 결과가 그대로 이어졌고 피신

청인 측이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되었다. 사건은 결판이 났다. 이렇게 나의 짧지 않았던, 한 달간의 힘들었던 시간은 지나갔다.

소송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대학생인 나에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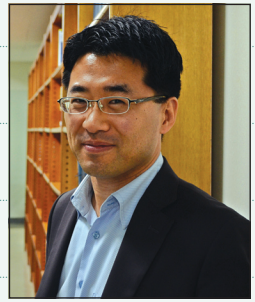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에 언론으로 인하여 약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혼자 해야 했다면 이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소송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대학생인 나에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해당 기자에게서 사과를 포함하여 그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아직도 블로그와 여러 사이트에 남아있는 나의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 마치 죄인처럼 보이며 나를 슬프게 한다. 하지만 정정보도로 인하여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의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이제는 매번 억울한 심정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명예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도 중요한 일인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피해를 받고도 대항하기 힘든 약자였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나를 도와주는 손길에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일반인들을 위하여 일해 주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런 언론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얼굴’까지 공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양재규

정책연구팀 팀장, 변호사



끊임없는 이단(異端) 시비. 하지만 그들만의 리그다. 세인들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다. 가끔 주류 매체에서도 이단 시비가 있는 종교단체들을 다루지만 어디까지나 사회문제로 비화되었을 때다. 여전히 이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라 말하기도 어렵다.

이단 시비가 있는 종교단체의 신도 9명이 모 종교방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2심 법원은 방송사 측에 원고 한 명당 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 11. 4. 선고 2010나121031 판결)을 내렸다. 대체 방송사는 무슨 일로 소송에서 진 것일까?


방송사에서 제작, 방영한 문제의 프로그램 출연 강사가 마침 유명한 이단전문가였다. 세인들에게는 관심 밖의 일인지 모르지만 기독교 내에서 이단은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강사는 원고들이 소속된 단체를 이단으로 지목하며 이단의 초등학교생들에 대한 포교활동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연한다. 그러면서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요, 교주를 찬양하는 그런 영상 노래를 저희가 어렵게 구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영상을 보여준다. 이 영상 속에 십 수년 전 원고들의 모습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소송에서 방송사는 이단의 피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잠시 해당 종교단체 측이 인터넷에 게시한 영상을 이용한 것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럴 수 있다. ‘百聞이不如一見’이라 하지 않았던가. 이단의 피해에 대해 백 번 듣는 것보다 어린 아이들이 해맑은 표정으로 자신들의 교주를 찬양하는 모습을 한 번 보는 것이 확실하다. 게다가, 피고는 방송사다. 보여줄 것이 없어서 문제지 보여줄 것이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단의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공익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 이 사건 프로그램 중에 반드시 어린이들인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인 종교활동 동영상을 포함시켜 원고들의 초상이나 음성을 공개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얼굴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음성을 소거하거나 자막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원고들의 법익침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 에 비추어 피고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이유 없다”

사안의 공익성과 초상 공개의 공익성을 구분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 하겠다. 사안 자체가 아무리 공공의 관심사라 하더라도 각론으로 들어가 굳이 초상까지 공개할 필요성이 없었다면 해당 프로그램 또는 기사는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2007년 문화일보의 신정아 씨 나체사진 보도 때도 그랬고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정용진 부회장 소송에서도 그랬다.

흔히 펜은 검보다 강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기자의 펜은 어떤 검이어야 할까? 이제 기자들은 글라디우스(짧고 몽툰한 로마시대의 검)가 아니라 환부만을 정확히 도려낼 수 있는 예리한 메스를 집어 들어야 할 때다.

한편, 방송사가 항변한 내용 중에는 문제의 영상이 해당 종교단체 부설 유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이라는 점도 있었다. 그러나 ‘공개된 영상’도 조심해야 한다. 법원은 “홈페이지에 이 사건 동영상의 일부가 올려져 있었다고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이 원고들에게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된 방송에 이를 사용할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러한 판단대로라면, 공개된 영상 및 사진이라 해도 미담기사에서나 사용할 수 있을 뿐 비판기사와 같은 부정적인 내용에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겠다. 



2010년 함안, 2012년 상주

장성원
기사심의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 이하 선심위)에서 하는 후보자의 시정요구 업무는 새로우면서도 익숙하다. 최근 '선심위'는 경북 상주시 소재 주간신문 두 곳을 상대로 한 곳은 정정보도, 다른 한 곳은 사과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사과문 게재는 4년 만에 처음이다. 그런데 왜 익숙한 느낌일까.

2010년 경남사무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함안군수가 모 주간신문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했다. 군수 선거를 앞둔 시기에 지면 대부분이 삽화까지 섞여가며 군수 비판 일색이었다. 편집국장 부인이 세금 환급을 못 받은 걸 '백성 등쳐먹은 세무행정'이라고 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물었더니 5,000원이라고 했다. 무려 오천 원! 이 매체는 선심위 경고문 결정을 받고도 경고문 아래 이를 비꼬는 기사를 썼다가, 잘못을 지적당하자 바로 자체 사과문을 게재했다.

함안의 다른 주간신문도 이에 못지않았다. 현 군수의 상대편 후보를 계속 비방하다가 중재위의 손해배상 결정을 받았는데도 나중에는 중재부의 조정과정마저 왜곡보도해서 중재부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정정하도록 했다. (두 매체 모두 지방선거 후 함안군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었다)

최근 상주시 주간신문 후보자의 시정요구건도 함안과 데자뷰(deja vu)다. 한 신문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그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이 매체가 미는 A후보 지지율이 3% 올라갔다. 실수라지만 37%와 40%가 유권자에게 주는 느낌이 다르지 않은가. 선심위가 정정보도 결정을 하자 보도문 바로 아래 <본지의 해명과 입장>을 3배 분량으로 실었다. 함안과 달리 선심위를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 자기네 신문이 문제없다며 PDF로 몇 달치 신문을 보내줬는데 A후보에 대한 지속적인 부각보도가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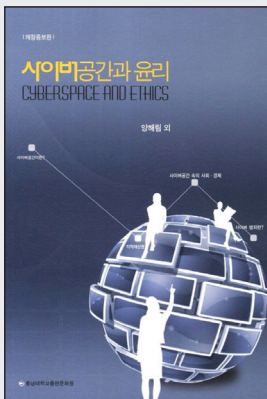
다른 주간신문은 반대로 A후보의 재산의혹과 병역면제사실을 부각하며 <도덕성 논란> 제목으로 1면 상단에 크게 신고는 아래에 당내 경선중인 양쪽 후보 사진을 실었다. 누구를 찍으라는 건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시가 70억 원 이상이라는 A 소유 빌딩 사진까지 실었다. 언론사 진술서에 보도근거로 언급된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그 건물 시세 문의 전화는 처음이라고 했다. 부디 앞으로는 공정하고 균형잡힌 선거기사를 쓰시기를 기원하면서 사과문 게재 결정문을 보냈다.

익숙한 일일수록 열정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결정문 단어 하나 하나에 당사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익숙하지만 새로운 올해의 봄이 어느덧 우리 곁에 오고 있다. ☺

BOOK 이달의 책

사이버공간과 윤리

양해림 외 지음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374페이지



2004년부터 충남대학교 교양과목에서 개설,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공간과 윤리”라는 강좌를 위해 편찬된 책이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부정적인 현상을 진단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익명성, 인터넷 중독, 사이버 범죄, 컴퓨터 해킹 및 바이러스 그리고 네티켓 기본원칙 등의 해결해야 할 윤리적 문제들에 관해 살피고 있다.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자체가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오프라인과 비교할 때 그 악영향의 범위는 너무나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면서, 익명성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완전한 사이버 자아 대신 현실적인 자아가 그 책임을 지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비대면 익명성의 사이버공간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매체들이 새로이 등장할 때마다 관련 법률의 부재 내지 미비 또는 비도덕적인 문제들이 뒤따르게 된다. 이런 면에서 정보윤리가 필요하다. 사이버공간의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정보윤리와 보안을 생활화하여 사이버 정화운동에 앞장서고자 노력해야 하겠다.



법률신문 법조광장에 기고



임병렬 위원(서울제4중재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기고문(‘피해자의 인격과 언론의 품격 사이’)이 법률신문 3월 19일자 법조광장에 실렸다. 임 위원은 “언론 보도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실질화가 필요하다”며 “이는 언론사에 부담을 가중하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언론의 품격을 높이는 길”임을 강조했다.

대한변협신문과 인터뷰



이택수 위원(강원중재부,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인터뷰가 대한변협신문 3월 5일자(389호)에 실렸다. 이 위원은 오랜 법조계의 연륜을 바탕으로 일선 변호사들에게 “헤어질 때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며 사건이 끝난 후에도 의뢰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함을 당부했다.

경희대 정경대학, 장애학생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



▲한균태 위원(오른쪽에서 세 번째)

한균태 위원(서울제5중재부, 경희대 정경대학장)은 3월 13일 계단을 오르내리기 불편한 장애학생을 위해 경희대 정경대학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시승식을 가졌다. 한 위원은 “이번 엘리베이터 설치로 장애학생이 수업을 듣는 데 한결 수월해졌다”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북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취임



김창희 위원(전북중재부,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3월 2일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임 학장으로 임명됐다. 김 위원은 1992년 전북대 사회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해 정치사회학부장, 사회과학 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김 위원은 2014년까지 2년간 사회과학대학 학장으로 임기를 수행한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학술토론회 개최



박경숙 위원(제주중재부,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은 2월 23일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 소장으로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주의에서 벗어나 올바른 정치의식 함양과 매니페스토에 의한 선거문화를 발전시키고자 개최됐다.

국립특수교육원과 학술연구 교류협약 체결



▲박남기 위원(왼쪽에서 세 번째)

박남기 위원(광주중재부, 광주교육대 총장)은 장애학생 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립특수교육원과 학술연구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광주교대는 장애학생 통합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등 특수교육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위원회 소식 NEWS

신임 중재부장 위촉

위원회는 신임 중재부장 9명을 3월 23일자로 위촉했다.

성명	중재부	경력사항
성지호	서울제3중재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제7중재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용달	대구중재부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박병철	광주중재부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장준현	경기중재부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형훈	강원중재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종춘	전북중재부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고규정	경남중재부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오현규	제주중재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오광건 사무총장, '경기저널' 및 'NETWORK'와 인터뷰



오광건 사무총장은 3월 23일에는 '경기저널', 3월 28일에는 한국사보협회지 'NETWORK'와 인터뷰를 가졌다. 오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소개하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해대학교 국제포럼에서 우리나라 언론조정·중재제도 소개



권오근 운영본부장은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상해대학교 법과대학 <ADR&중재 연구소>에서 개최하는 국제포럼(주제: 다양한 문화적 관점 하의 ADR과 중재)에 참석했다.

이 포럼에서 권 본부장은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에 대해 주제발표했으며,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에 언론조정·중재분과 신설을 제의하기도 했다.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발간



위원회는 3월 31일 창립 31주년을 맞아 1981년부터 2011년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를 발간했다. 위원회 30년사에는 위원회 및 언론중재제도의 발전 과정과 주요 사업실적 등이 실렸다.

계간지 「언론중재」 봄호 발간



위원회 계간지 「언론중재」 봄호(통권 122호)가 3월 30일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특집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 특성과 자율규제 현황'과 연구논문 '정치 풍자/패러디에 대한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언론법제 관련 논문 및 판결사례 등이 실렸다.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3월 20일까지 414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는 조정성립 108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건(동의 2건, 이의 1건), 조정불성립결정 50건, 기각 15건, 각하 4건, 취하 166건, 계류 68건이며, 성공률별로는 조정성공률 68.3%, 본안성공률 80.5%로 나타났다.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135건, 신문 111건, 인터넷뉴스서비스 107건, 방송 49건, 뉴스통신 8건, 기타 4건이었다. 한편, 중재사건은 13건이 접수되어 모두 중재결정이 내려졌다.

〈조정신청 처리현황〉

기준일자 : 2012. 1. 1. ~ 2012. 3. 20.

청구 건수	본안 심리 건수	처리 결과										성공률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조정 성공률	본안 성공률
			동의	이의	계속				심리전	심리중			
414	257	108	2	1		50	15	4	70	96	68	68.3%	80.5%

$$* \text{조정성공률} = \frac{\text{조정성공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 중 동의)}}{\text{조정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조정불성립결정)}}$$

$$* \text{본안성공률} = \frac{\text{본안성공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심리 중 취하)}}{\text{본안심리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조정불성립결정+심리 중 취하)}}$$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68건의 법익침해 기사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침해유형별로는 범죄 수법 상세묘사 25건, 마약 용량·용법 등 공개 19건, 피의자 신원공개 15건, 자살 관련 보도 5건,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3건, 보도윤리 위반 1건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43건, 일간지 19건, 뉴스통신 5건, 주간지 1건으로 나타났다.

선거기사심의 현황

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011년 12월 12일부터 2012년 3월 20일까지 공평성 및 형평성 위반 43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 12건, 외부기고 위반 12건, 광고제한 위반 7건 등 74건에 대해 사과문 게재 1건, 정정보도문 게재 1건, 경고 3건, 주의 40건, 권고 29건을 결정했다. 한편, 후보자의 시정요구는 11건이 접수되어 사과문 게재 1건, 반론보도문 게재 1건, 정정보도문 게재 2건, 기각 1건, 각하 1건, 취하 5건으로 처리됐다.

또한,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2012년 2월 11일부터 2012년 3월 20일까지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 2건 등 총 2건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

상담현황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3월 20일까지 총 598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는 조정절차 안내 552건, 재상담 예정 110건, 타 기관 안내 38건, 법적절차 안내 28건 등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일간신문 178건, 인터넷신문 152건, 방송 126건, 포털 등 인터넷뉴스 서비스 68건, 주간신문 59건, 뉴스통신 32건, 잡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현황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3월 20일까지 27건의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실시했다. 대상 기관별로 보면 인턴십 프로그램 11건, 언론사 8건, 교육연수기관 3건, 법무수습교육 2건, 대학 1건, 공·사기업 1건, 지자체 1건이다. 법무수습교육은 사법연수원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상대로 2주간 진행됐다.

이제 조정중재도 인터넷으로, 언론중재Eye-Net 서비스!!

The screenshot shows the Eye-Net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홈으로', '로그인', and '회원가입'. Below this, there are several service categories: '전자심리안내', '전자제출', '전자민원', '전자송달', '나의전자심리', and '사건검색'. The main content area includes a login section with fields for '아이디' and '비밀번호', a 'LOGIN' button, and options for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There is also a calendar for January 2012. Below the calendar, there are three service buttons: '전자 심리상담', '전자 조정신청', and '전자 중재신청'. To the right, there is a '사건검색' section with dropdown menus for '연도선택' and '처리결과', and a '검색' button. At the bottom, there is a '공지사항' section with a list of notices and a '회원위원회' section with links to '사건검색', 'FAQ', '불고답하기', and '각종서식안내'.

언론중재Eye-Net 이란?

- 언론중재Eye-Net은 전자적으로 조정중재를 신청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하는 전산정보시스템입니다.
-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상담, 조정중재신청, 심리준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론중재Eye-Net을 찾아주세요.

언론중재Eye-Net 이용안내

1. 전자제출

위원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 중 각종 서류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민원

문고 답하기와 1:1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각종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송달 확인

위원회에서 전자송달한 각종 통지서, 조정조서, 결정문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나의 전자심리

나의 사건 진행내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고, 진행 중 사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Eye-Net <http://people.pac.or.kr>

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 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 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등의 게재 또는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려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011년 12월 12일부터 2012년 5월 11일까지,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2012년 2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2012년 4월 22일부터 2013년 1월 18일까지 운영됩니다.”



불공정 보도로 인한 선거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 시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등의 게재 또는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리고, 시정요구 사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선거후보자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사건을 심의합니다.

선거기사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인용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